

#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

2014. 12. 2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2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(2014년 12월 2일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류보현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설치 대상인 '마포구 보훈회관 신축'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□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

- 동 계획안은 1988년 건축된 마포구 신수로 58 (구)신수동주민센터(지하1층, 지상2층, 연면적 567.3㎡)를 건물노후 및 이용공간 부족으로 이를 철거하고 동 소재지에 마포구 보훈회관(지하1층, 지상4층 연면적 1,261㎡ 규모의 건물을 사무실, 교육실, 공동회의실, 체력단련실, 강당 등으로 사용)을 새로 신축하여 보훈단체(9개 단체)가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.
- 마포구 보훈회관 신축 계획(안)
  - 위 치 : 마포구 신수로 58

- 대지면적 : 496㎡(150평)
- 건물용도 : 마포구 보훈회관
- 건축규모 : 지하1층, 지상4층 / 연면적 1,261㎡(382평)

구 분		배 치 (안)	
층 별 현 황	지하1층	269㎡	체력단련실, 주차장, 기계실, 창고 등
	지상1층	250㎡	공동회의실, 사랑방, 식당, 관리사무실
	지상2층	250㎡	보훈단체 사무실(5개), 교육실
	지상3층	250㎡	보훈단체 사무실(4개), 교육실
	지상4층	242㎡	강당
건축면적		270㎡	(건폐율 54.5%)
지상연면적		992㎡	(용적률 200%)

○ 사 업 비 : 3,179,587천원

○ 재원별 예산계획 및 확보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사 업 비	2015년	2016년		2017년
		구 비	국비	구비	구비
총 계	3,179,587	128,157	500,000	1,019,391	1,532,039
공 사 비	2,939,391		500,000	939,391	1,500,000
설 계 비	128,157	128,157			
감리비	32,039				32,039
철거비	80,000			80,000	

※ 국비 지원 : 5억원 (서울지방보훈청)

### 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김은모)

- 마포구 보훈회관은 1988년 건축된 (구)신수동주민센터를 2010. 12월 보훈회관으로 구조 변경 공사를 한 후 2011. 3. 21. 상이군경회 외 6개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곳에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으나, 동 건물은 건축한 지 26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누수는 물론 회원들 대부분이 연로(회원 약 4,200명 중 약 90%가 60대 이상 노인임)하고 장애인이 많아 현재 총계로 되어 있는 동 건물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고,

- 또한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입주 단체 중 3개 단체(상이군경회, 전물군경유족회, 전물군경미망인회)가 1개의 사무실을 공동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, 9개 보훈 단체 중 2개 단체(월남참전자회, 특수임무유공자회)는 입주하지 못하고 타 건물을 임차 중에 있어, 비입주 단체 회원들이 계속 입주를 희망하는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 실정임.
- 본 건물은 1988년에 지어진 노후 건물로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어 총 3회(2011. 3. 31. 리모델링 공사비 2억 8,500만원, 2013. 4. 7. 계단수리 공사비 315만원, 2013. 6. 13. 옥상방수 공사비 968만원 등)에 걸쳐 총 공사비 2억 9,783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현재도 벽체에 금이 가고, 누수가 되고 있고 지하에서는 물이 새는 등 매년 유지관리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이 비용절감 면에서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됨.
- 그러나 보훈회관은 국가보훈처에서 신축 시 5억원의 국비를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어야 마땅하나 현재 우리 구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황에서 건립비 총 32억원 중 85%인 27억이 마포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으로
  - 1) 먼저 국가 보훈회관을 건립하면서 국비보다 구비를 예산에 먼저 반영해야 하는 지
  - 2) 보훈회관 신축계획 시 관내에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4조에 따른 보훈회관 이용대상 단체는 더 이상 없는 지, 이용 대상 국가유공자 단체 및 회원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
  - 3) 또한 보훈회관은 건물 준공이후 매년 유지관리를 위해 구예산 지원이 필요하나, 최근 구예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본 건물에 대한 용도와 위치에 따른 수익성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
- 다만, 마포구 보훈회관의 신축건립은 국가 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하며 현재 우리 구 보훈

단체 회원은 타 자치구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훈회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타 자치구 보훈단체 회원 수준에 걸맞는 형평성 있는 예우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 마포구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과 그 가족에게 보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**

**8. 기타사항 : 없음**